

의안번호	2206449
의 퇴 인	이언주의원
회 답 일	2025.02.27.
추계번호	24C5853

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40조의2 (보험자병원의 설립)	○ 공단은 제14조제1항제7호*에 따른 의료시설의 운영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보험자병원을 설립·운영할 수 있음(제1항) * 의료시설의 운영	의무규정
2	안 제40조의4 (보험자병원의 사업)	○ 보험자병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함(제1항) 1. 다음 각 목에 따른 공공의료사업 가. 방문진료, 의료지원 등 지역사회 연계 사업 나. 재활시설방문, 의료봉사, 긴급구호활동 등 지역사회 공헌사업 다. 자원봉사 운영사업 라. 임상상담 등 사회복지 상담사업 2. 전공의의 수련 등 보건의료인력의 훈련 3. 의학과 관련 연구 4. 임상연구 5. 진료사업 6. 그 밖에 장례식장 운영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험자병원의 운영을 위한 수익사업	재량규정
3	안 제40조의5 (경영평가)	○ 공단은 매년 보험자병원의 경영실적을 평가함(제1항) ○ 공단은 제1항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결과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보험자병원에 대한 인사상 또는 예산상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(제2항) ○ 경영실적 평가의 절차, 경영실적 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, 그 밖에 경영실적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함(제5항)	재량규정
4	안 제40조의6 (비용 지원)	○ 보험자병원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(관할 지역에 보험자병원이 설립될 예정인 지방자치단체를 포함)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자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	재량규정

Ⅱ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40조의2 (보험자병원의 설립)	○ 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2	안 제40조의4 (보험자병원의 사업)	
3	안 제40조의5 (경영평가)	
4	안 제40조의6 (비용 지원)	

2. 상세 사유

□ 보험자병원의 설립·사업·경영평가 및 비용지원(안 제40조의2, 안 제40조의4~6)

- 개정안은 현행법 제14조제1항제7호¹⁾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보험자병원에 대한 역할을 명확히 하기 위해 사업 범위와 책무, 경영평가 실시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
 - － 현재 건강보험의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00년 3월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 병원(당시 의료보험공단 일산병원)을 개원하여 운영하고 있음
- “보험자병원의 양적·질적 확충이 필요”하다는 개정안의 취지에 따라 현재 1개소인 보험자병원을 추가로 설립하거나 현행 일산병원의 사업범위를 확대하

1) 동법 제14조(업무 등)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.

1.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 관리
 2. 보험료와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의 부과·징수
 3. 보험급여의 관리
 4.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의 조기발견·예방 및 건강관리를 위하여 요양급여 실시 현황과 건강검진 결과 등을 활용하여 실시하는 예방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
 5. 보험급여 비용의 지급
 6. 자산의 관리·운영 및 증식사업
 7. 의료시설의 운영
- <후략>

고 병원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을 지원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, 현시점에 보험자병원의 추가 설립 여부, 규모 및 업무 범위 등을 합리적으로 가정하기 어려워 추계가 어려움

- 참고로, 일산병원의 2025년 기준 예산은 4,296억원이며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으로 부터 478억 1,400만원을 지원받고 있는데, 개정안에 따라 이를 지방자치단체 지원으로 대체할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재정소요는 증가함

[표 1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2025년도 예산안

(단위: 백만원)

수 입		지 출	
구 분	예산액	구 분	예산액
총 계	429,576	총 계	429,576
1. 사업수입	363,189	1. 사업비용	397,996
- 의료수익	366,548	- 재료비	89,904
- 진료비감면	△3,359	- 인건비	227,250
2. 사업외수입	18,573	- 관리운영비	80,842
- 자산운영수익	787	2. 사업외비용	875
- 시설운영수익	11,275	- 편의시설운영매입비	587
- 연구수익	2,270	- 잡손실	288
- 기타수익	4,240	3. 비유동자산	30,705
3. 일반회계전입금 (공단지원금)	47,814		

자료: 보건복지부

- 또한 보건복지부에 따르면, 현재 공단은 안 제40조의5에 따른 보험자병원에 대한 경영평가를 관련 근거²⁾에 따라 내부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매년 수행하고 있으므로 보험자병원의 신규 설립 시에도 성과평가를 위한 추가 인건비 및 운영비의 필요성은 낮음

2)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8조, 기획재정부 「공기업 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」 제24조, 국민건강보험공단 「성과평가지침」

[표 2] 2025년 일산병원 평가 지표

평가부문		세부지표
경영 관리	경영전략	고객만족도 및 경영공시 관리 등 3개
	재무관리	재무건전성(사업비 집행률 등) 달성도
	조직(보수)관리	합리적 인적자원 운용 및 성과관리 등 2개
	사회적책임	일자리 창출(장애인 고용의무인원 충족도 등) 3개
주요 사업	진료사업	환자진료 실적, 적정진료 제공 및 의료질 향상 등 4개
	보험자병원사업	보험자 모델병원 역할 및 공공의료사업 수행 등 5개
	정책지원(연구) 사업	국민건강보험제도 개선 정책 지원 등 4개

-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

Ⅲ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사회비용추계과	임슬기	이진우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임슬기	02-6788-4740	sg.lim@assembly.go.kr